



인 천 지 방 법 원

제 2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2구합56757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
담당변호사 ○○○
피 고 ○○구청장
변 론 종 결 2023. 6. 23.
판 결 선 고 2023. 8. 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9. 7. 원고에게 한 ○○ ○○구 ○○동 ○○○ 외 30건 토지의 2020년분 재산세 1,960,470,170원 및 지방교육세 356,963,420원의 부과처분 중 재산세 1,538,500,970원 및 지방교육세 272,569,58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경제자유구역청장의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경제자유구역청장¹⁾은 2016. 3. 21. 개발사업시행자를 ○○○○부와 원고로 하여 '○○경제자유구역 ○○○○도시 ○○○○터미널 실시계획'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경제자유구역법'이라 한다) 제9조, 제10조에 따라 승인·고시하였다(○○○○○○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16-55호. 이하, 위 개발사업을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위 실시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경제자유구역법 제10조 및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사항

2. 개발사업의 목적과 개요

나.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구분		면적(㎡)	구성비(%)
합계		1,138,823	100.0
상업시설용지	소계	428,823	37.7
	복합지원	428,823	37.7
공공기반시설용지	소계	710,000	62.3

3. 단위개발사업지구의 위치와 면적

가. 위치: ○○ ○○구 ○○동 ○○○번지 서측 전면해상 일원

<붙임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3.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 도시계획시설(항만) 결정 조서

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30조 제3항, 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2021. 9. 14. 대통령령 제319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3항 제16호, 제21호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실시계획의 승인·변경승인 및 그 고시에 관한 권한을 위임 받았다.



구분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기정	변경 후
신설	항만	항만시설	○○동 ○○○번지	-	397,893
		항만배후단지	서측 전면해상	-	740,930

○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조서

가) 총괄표

구분		면적(㎡)		비고
		기정	변경 후	
항만시설	기능시설	-	230,885	컨테이너 장치장, 에이프런
	지원시설	-	167,008	여객터미널, 크루즈터미널 등
항만배후단지	복합지원용지	-	428,823	
	공공시설	-	312,107	

2) ○○○○○○경제자유구역청장은 2017. 12. 4. 복합지원용지의 면적을 428,823㎡에서 428,822.8㎡로 변경하는 내용의 ○○경제자유구역 ○○○○도시 ○○○○터미널 실시계획(변경)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하였고(○○○○○○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 2017-48호), 2020. 1. 13. 복합지원용지의 면적을 428,822.8㎡에서 429,061.6㎡로 변경하는 내용의 ○○경제자유구역 ○○○○도시 ○○○○터미널 실시계획(변경)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하였다(○○○○○○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20-2호).

3) ○○○○○○경제자유구역청장이 위와 같이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고 이를 고시함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30조에 규정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국토계획법 제32조에 규정된 지형도면 고시가 있는 것으로 의제되었다(경제자유구역법 제11조 제1항 제16호).

나. 원고의 토지 소유 및 피고의 재산세·지방교육세 처분 등



1) 원고는 2020. 6. 1. 당시 다음 표 기재 각 토지(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에는 지번으로만 표시한다)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었다. 이 사건 각 토지는 국토계획법 제2조 제13호, 구 국토계획법 시행령(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호에 규정된 공공시설인 항만을 위한 토지에 해당하고, ○○○○○경제자유구역청장이 승인·변경승인한 '○○경제자유구역 ○○○○도시 ○○○○터미널 실시계획'에는 이 사건 각 토지가 항만배후단지(복합지원 용지)로 지정되어 있다.

지번	지목	면적(㎡)	지번	지목	면적(㎡)
○○ ○○구 ○○동 ○○○-○	대	16,531.8	○○ ○○구 ○○동 ○○○-○○	대	31,647.5
○○ ○○구 ○○동 ○○○-○	대	82,151.1	○○ ○○구 ○○동 ○○○-○○	대	68,624.7
○○ ○○구 ○○동 ○○○-○	대	41,689.3	○○ ○○구 ○○동 ○○○-○○	대	44,810.3
○○ ○○구 ○○동 ○○○-○	대	35,822.7	○○ ○○구 ○○동 ○○○-○○	대	61,261.5
○○ ○○구 ○○동 ○○○-○	대	17,862.7	○○ ○○구 ○○동 ○○○-○○	대	9,973.8
○○ ○○구 ○○동 ○○○-○○	대	18,686.2	면적 합계		429,061.6

2) 피고는 원고가 2020. 6. 1. 당시 이 사건 각 토지를 비롯한 31필지의 토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었고, 해당 토지가 원고가 소유하고 있는 항만시설용 토지 중 항만공사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사업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기 위한 토지로서 구 지방세법(2020. 12. 29. 법률 제177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06조 제1항 제3호 바목, 구 지방세법 시행령(2020. 6. 2. 대통령령 제307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 제6항 제11호에 규정된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구 지방세법 제110조 제1항,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 3), 제112조 제1항, 제15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출한 2020년 귀속 재산세 1,960,470,170원 및 지방교육세 356,963,420원을 2020. 9. 7. 원고에게 부과·고지하였다(이하, 각각 '이 사건 재산세 처분', '이 사건 지방교육세 처분'이라 한다).



세목	구분		산출근거
재산세	재산세(토지)	과세표준	892,408,579,125원
		세율(%)	0.2
		세액	1,784,817,149원
	재산세(도시지역분)	과세표준	125,466,450,760원
		세율(%)	0.14
		세액	175,653,029원
	고지세액[= 재산세액(토지) + 재산세액(도시지역분), 10원 미만 버림]		1,960,470,170원
지방교육세	과세표준		1,784,817,149원
	세율(%)		20
	고지세액(10원 미만 버림)		356,963,420원

3) 원고는 2020. 12. 7. 조세심판원장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심판청구가 2022. 6. 3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에서 11,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1. 12. 28. 법률 제186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 제2항(이하, '이 사건 감경조항'이라 한다)에 따르면, 국토계획법 제2조 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로서 같은 법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가 된 후 과세기준일 현재 미집행된 토지의 경우 재산세의 100분의 50이 감경된다.

그런데 이 사건 각 토지는 국토계획법 제2조 제13호에 규정된 공공시설인 향만시설로서 국토계획법 제30조 및 제32조에 규정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지형도면의 고시가 이루어졌다. 또한, 이 사건 감경조항의 개정 경위, 입법 취지에 비추어 이 사건



감경조항에 규정된 '미집행' 요건은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설치가 예정된 도시계획시설·공공시설의 설치가 완료되어 해당 토지가 실제로 이용됨으로써 토지소유자의 토지사용의 제약이 해소될 때까지는 충족된다고 해석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각 토지의 경우 과세기준일인 2020. 6. 1.까지 사업시행자가 선정되지 않아 ○○항 ○○○○터미널 복합지원용지로 집행되지 못한 '미집행된 토지'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감경조항에 따라 이 사건 재산세·지방교육세 처분 중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재산세 843,938,399원, 지방교육세 168,787,679원의 100분의 50이 감경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재산세·지방교육세 처분 중 재산세 1,538,500,970원[= 1,960,470,170원 - 421,969,200원(= 843,938,399원 × 50/100)], 지방교육세 272,569,580원[= 356,963,420원 - 84,393,840원(= 168,787,679원 × 50/100)]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

이 사건 각 토지는 ○○항 ○○○○부두 복합지원시설(1단계, 2단계)의 부지에 해당하는데, 원고는 2019. 3. 14. ○○항 ○○○○부두 복합지원시설(1단계) 부지조성공사 및 기반시설(도로, 상하수도, 전기통신 등)을 준공하였고, 2020. 2. 28. ○○항 ○○○○부두 복합지원시설(2단계) 부지조성공사 및 기반시설(도로, 상하수도, 전기통신, 조정 등)을 준공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는 과세기준일 현재 '미집행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아 이 사건 감경조항에 규정된 재산세 감경 대상이 아니므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감경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 사건 재산세·지방교육세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3. 관계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재산세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 감경조항은 국토계획법 제2조 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로서 같은 법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가 된 후 과세기준일 현재 미집행된 토지의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21. 12. 31.까지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본 처분의 경위에 따르면, 이 사건 각 토지는 국토계획법 제2조 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에 해당하고,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국토계획법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가 이루어졌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과세기준일(2020. 6. 1.) 당시 이 사건 각 토지가 이 사건 감경조항에 규정된 '미집행된 토지'에 해당하였는지 여부이다.

나. 이 사건 각 토지가 과세기준일 당시 이 사건 감경조항에 규정된 '미집행된 토지'에 해당하였는지 여부

1) 인정 사실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6, 7, 8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해양수산청장²⁾은 구 항만공사법(2023. 5. 16. 법률 제19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항만공사법'이라 한다) 제24조 제2항에 따라 2019. 3. 14. 원

2) 구 항만공사법(2023. 5. 16. 법률 제19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항만공사법 시행령 제29조의2 제2호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항만공사법 제24조에 따른 준공확인, 준공확인증명서의 발급, 관보에의 고시에 관한 권한을 위임 받았다.



고가 ○○항 ○○○○부두 복합지원시설(1단계) 부지조성공사를 2018. 11. 20. 준공(공사기간 2016. 4. 29. ~ 2018. 11. 30.)한 것을 확인하여 준공확인증명서를 발급하고 2019. 3. 20. 이를 고시하였고(○○○○○○수산청 고시 제2019-15호), 2020. 2. 28. 원고가 ○○항 ○○○○부두 복합지원시설(2단계) 부지조성공사를 준공(공사기간 2017. 5. 22. ~ 2019. 9. 30.)한 것을 확인하여 준공확인증명서를 발급하고 2020. 3. 5. 이를 고시하였다(○○○○○○수산청 고시 제2020-22호). ○○○○○수산청장이 발급한 각 준공확인증명서에는 공사장소가 '○○ ○○구 ○○동 ○○○ ○○물류2단지 서측 해상'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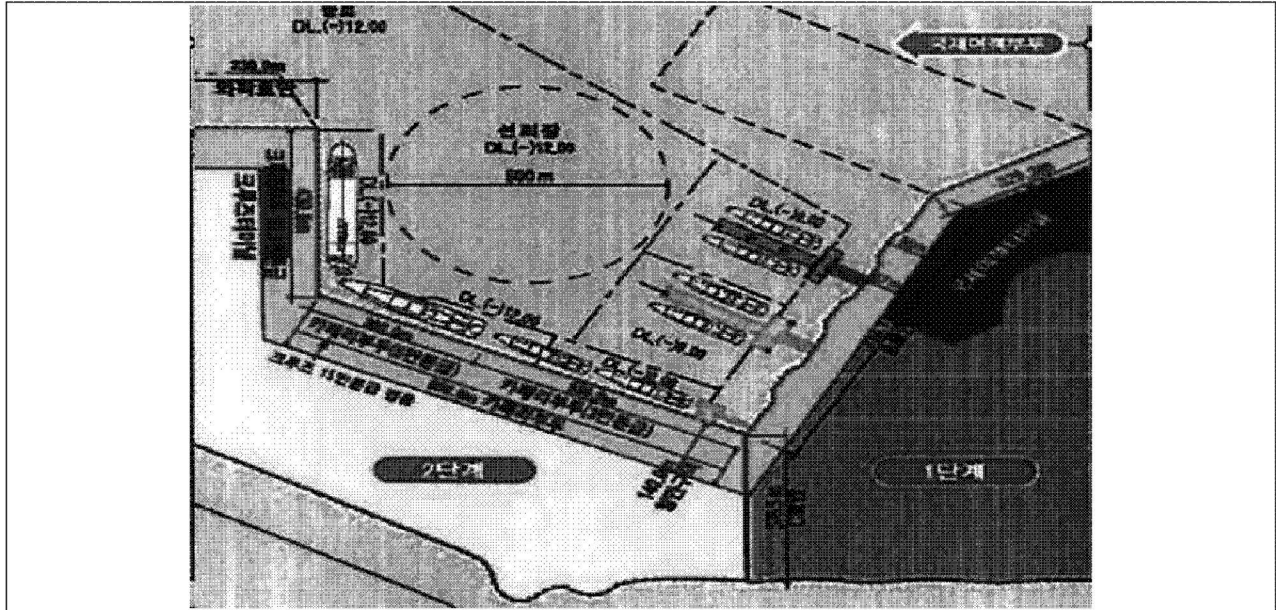
나) 원고가 2019. 2.경 작성한 ○○항 ○○○○부두 복합지원시설(1단계) 부지조성공사 준공보고서 중 확정종합도에는 분할 전 ○○ ○○구 ○○동 ○○○-0. 잡종지 543.754.7㎡(2018. 1. 17. ○○동 ○○○-0, ○○동 ○○○-0, ○○동 ○○○-0, ○○동 ○○○-0, ○○동 ○○○-0, ○○동 ○○○-0 등으로 분할되었다) 등이 기재되어 있고, 원고가 2020. 2.경 작성한 ○○항 ○○○○부두 복합지원시설(2단계) 부지조성공사 준공보고서 중 확정종합도에는 ○○동 ○○○-0, ○○동 ○○○-0, ○○동 ○○○-0, ○○동 ○○○-0, ○○동 ○○○-0 등이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가 2020. 6.경 작성한 '○○항 ○○○여객터미널 및 ○○○터미널 사업 현황'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구분	공사개요	공사기간
복합지원시설 부지조성공사 (1단계)	부지조성 545,000㎡ 및 기반시설 1식 (도로, 상하수도, 전기통신 등)	2016. 4.~2018. 11. (준공)
복합지원시설 부지조성공사 (2단계)	부지조성 406,000㎡ 및 기반시설 1식 (도로, 상하수도, 전기통신, 조경 등)	2017. 5.~2019. 9. (준공)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11-24



라) 이 사건 각 토지의 위치는 다음 그림과 같다.



2) 판단

앞서 본 처분의 경위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청장은 2016. 3. 21.부터 2020. 1. 13.까지 실시계획을 승인·변경승인하였는데, 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국토계획법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결정, 국토계획법 제88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었다(경제자유구역법 제11조 제1



항 제16호).

나아가 앞서 본 처분의 경위와 위 인정 사실 및 관계 규정의 내용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국토계획법상 도시관리계획결정·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은 과세기준일(2020. 6. 1.) 당시 이미 집행이 완료된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가 이 사건 감경조항에 규정된 '미집행된 토지'에 해당하였다고 볼 수 없다.

가)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늦어도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여 준공검사를 받은 때에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집행이 완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국토계획법 제2조에 따르면, '기반시설'에는 항만이 포함되고(제6호 가목), '도시·군관리계획'에는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이 포함되며(제4호 다목), '도시·군계획시설'이란 기반시설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하고(제7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란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제10호).

그런데 ○○○○○경제자유구역청장이 2016. 3. 21. 승인·고시한 실시계획에는 이 사건 각 토지를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항만(항만배후단지)]로 결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는 국토계획법상 도시계획시설에 해당한다.

(2) 국토계획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할 수 있고(제30조), 도시관리계획결정이 고시되면 직접 지형도면을 작성하거나 지형도면을 승인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하며(제32조 제1항, 제4항),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로부터 일정 기간 이내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제85조 제1항),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그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인가를 받아야 하며(제88조),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공사를 마친 때에는 특별시장 등으로부터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고 특별시장 등은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사완료 공고를 하여야 한다(제98조).

이처럼 국토계획법상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사업은 해당 사업의 시행자가 공사를 마친 뒤 준공검사를 받은 때에 완료되게 된다.

나) ○○○○○경제자유구역청장이 승인 또는 변경승인한 '○○경제자유구역 ○○○○○도시 ○○○○터미널 실시계획'상 이 사건 각 토지는 복합지원용지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은 이 사건 각 토지를 복합지원용지로 조성하는 것이다.

다)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인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서 복합지원용지 조성공사를 시행하여 과세기준일(2020. 6. 1.) 이전인 2019. 3. 14. 및 2020. 2. 28.에 국토계획법상 준공검사를 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1) ① 원고가 작성한 ○○항 ○○○○부두 복합지원시설(1, 2단계) 부지조성공사 준공보고서 중 확정종합도에 이 사건 각 토지가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원고가 작성한 '○○항 ○○○○○터미널 및 ○○○터미널 사업현황'에 복합지원시설 부지조성공사를 시행하였다고 표시된 1단계, 2단계 부지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위치와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서 복합지원시설(1, 2단계) 부지조성공사를 시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수산청장이 발급한 각 준공확인증명서에 공사장소가 '○○ ○○구 ○○동 ○○○ ○○물류2단지 서측 해상'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을 근거로 피고가 준공되었다고 주장하는 토지는 ○○ ○○구 ○○동 ○○○ 토지일 뿐 이 사건 각 토지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 ○○구 ○○동 ○○○번지 서측 해상'은 이 사건 사업이 시행되는 단위개발사업지구의 위치를 가리키는 것일 뿐 ○○ ○○구 ○○ 동 ○○○ 토지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수산청장은 구 항만공사법 제24조 제2항에 따라 2019. 3. 14. 복합지원시설(1단계) 부지조성공사에 관한 준공확인증명서를, 2020. 2. 28. 복합지원시설(2단계) 부지조성공사에 관한 준공확인증명서를 각각 발급하였고, 이에 따라 국토계획법상 도시관리계획결정,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에 따른 준공검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의제되었다(구 항만공사법 제24조 제2항, 제3항, 제23조 제1항 제1호).

다. 소결

이 사건 각 토지가 과세기준일 현재 이 사건 감경조항에 규정된 '미집행된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재산세 처분을 하면서 재산세를 감경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5. 이 사건 지방교육세 처분의 적법 여부

구 지방세법에 따르면,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자가 되고(제150조 제6호), 구 지방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액(제11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재산세액은 제외)에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이 지방교육세액이 된다(제151조 제1항 제6호).

그런데 앞서 본 대로 이 사건 재산세 처분이 적법한 이상, 피고가 원고가 납부하여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11-24

야 할 재산세액(제11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재산세액 제외) 1,784,817,149원에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인 356,963,420원을 지방교육세로 원고에게 부과한 것 역시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6.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별지

관계 규정

■ 구 지방세법(2020. 12. 29. 법률 제177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바. 에너지·자원의 공급 및 방송·통신·교통 등의 기반시설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단서 생략)

제110조(과세표준)

①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토지

다. 분리과세대상

3) 그 밖의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2

제1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이하 이 조에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이라 한다) 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토지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세액에 제2호에 따른 세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세액을 재산세액으로 부과할 수 있다.

1.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제111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2. 제110조에 따른 토지등의 과세표준에 1천분의 1.4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제150조(납세의무자)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6. 재산세(제112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액은 제외한다)의 납세의무자

제151조(과세표준과 세율)

- ① 지방교육세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6. 이 법 및 지방세감면법령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액(제112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액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20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20. 6. 2. 대통령령 제307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 ⑥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후문 생략)

11. 「항만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항만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항만시설(「항만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을 말한다)용 토지 중 「항만공사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사업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기 위한 토지. 다만, 「항만법」 제2조 제5호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용 토지로서 제107조에 따른 수익사업에 사용되는 부분은 제외한다.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1. 12. 28. 법률 제186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사권 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주택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로서 같은 법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및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가 된 후 과세기준일 현재 미집행된 토지의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도시·군관리계획"이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 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복지, 안보, 문화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계획을 말한다.
 - 가.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 나.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市街化調整區域),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 다.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 라.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 마.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 바.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
6.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 가. 도로·철도·항만·공항·주차장 등 교통시설
7. "도시·군계획시설"이란 기반시설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10.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란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13. "공공시설"이란 도로·공원·철도·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

제30조(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 ① 시·도지사³⁾는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후문 생략)
- ⑦ 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후문 생략)

제32조(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 등)

-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30조에 따른 도
-
- 3)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의미한다(제8조 제3항). 이하 같다.



시·군관리계획 결정(이하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이라 한다)이 고시되면 지적(地籍)이 표시된 지형도에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을 자세히 밝힌 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직접 지형도면을 작성하거나 지형도면을 승인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85조(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하여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원조달계획, 보상계획 등을 포함하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의제되는 경우에는 해당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88조(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①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와 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제3항에서 같다)는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단서 생략)

③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작성한 실시계획이 제43조 제2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의 기준 등에 맞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시계획을 인가하여야 한다. (후문 생략)

제91조(실시계획의 고시)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변경작성을 포함한다), 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 폐지하거나 실시계획이 효력을 잃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98조(공사완료의 공고 등)

①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와 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공사를 마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시·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사완료보고서를 받으면 지체 없이 준공검사를 하여야 한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11-24

③ 시·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한 결과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에게 준공검사증명서를 발급하고 공사완료 공고를 하여야 한다.

■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공공시설)

법 제2조 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항만·공항·광장·녹지·공공공지·공동구·하천·유수지·방화설비·방풍설비·방수설비·사방설비·방조설비·하수도·구거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인가·허가 등의 의제)

① 개발사업시행자가 제9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인가·지정·승인·협의 및 신고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0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토지의 분할·형질변경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제30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③ 시·도지사⁴⁾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청장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 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2021. 9. 14. 대통령령 제319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권한의 위임)

4)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의미한다(제3조의2 제2항 제1호).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11-24

③ 시·도지사는 법 제30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한다.

16. 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과 변경승인

21. 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승인·변경승인의 고시

■ 구 항만공사법(2023. 5. 16. 법률 제19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 등의 의제)

① 공사⁵⁾가 제22조에 따른 항만시설공사의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인가·허가·면허·승인·결정·지정·협의·신고 또는 해제 등(이하 "인가·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토지의 형질 변경 및 토지 분할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

제24조(준공확인)

① 공사는 제22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항만시설공사 또는 신항만건설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하면 지체 없이 공사준공보고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준공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준공확인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준공검사를 한 후 해당 항만시설공사가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준공확인증명서를 공사에 발급하고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이 제2항에 따른 준공확인증명서를 발급한 때에는 제23조 제1항 각 호 또는 「신항만건설촉진법」 제9조 제2항 각 호에 따라 의제된 인가·허가등에 따른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41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5) '항만공사'를 의미한다(제4조 제1항).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11-24

■ 항만공사법 시행령

제29조의2(권한의 위임)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공사의 관할구역을 관장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2. 법 제24조에 따른 준공확인, 준공확인증명서의 발급, 관보예의 고시 및 준공 전 사용신고의 수리(受理)

(끝)